의안번호	2219652
의 뢰 인	김선교 의원
회 답 일	2026. 9. 29.
추계번호	26B334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보수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보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제외)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 기준을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미리 인건비 증가액을 특정하여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위진수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위진수	02-6788-4650	wjinsu@nabo.go.kr

[참고자료]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 공중방역수의사 현황

○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개요 및 관리체계, 주요 임무, 임용인원, 근무기간, 신분, 연간 보수 등

- (제도 개요) 2006년 국가와 지자체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신설

* 병역법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 (관리체계) 국방부·병무청공중방역수의사 선발, 농식품부공방수 제도 총괄, 시·도 및 검역본부에 공방수 배치, 배치기관시·도 및 검역본부에서 근무기관에 배치, 근무상황, 업무수행 관리·감독 등
- (주요임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수행
- (복무기간) 군사교육소집기간(3주) 외 3년
- (신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보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보수기준

보수 구분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봉급(중위1호봉~3호봉): 2,306,700～2,463,300/월
가축방역수당: 20,000/월, 정근수당: 461,340～985,320/연,
정근수당가산금: 30,000/월, 명절휴가비: 2,768,040～2,955,960/연

❑ 최근 5년간(2022~2026)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및 임용 통계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150	150	150	150	127
실제 편입인원		150	127	103	102	2
지역별 신규 배치인원수	검역본부	8	9	8	8	1
	부산	0	0	1	0	0
	대구	0	0	0	0	0
	인천	2	0	0	1	0
	광주	0	0	0	0	0
	대전	2	0	0	0	0
	울산	0	0	0	0	0
	세종	0	1	0	1	0
	경기	18	19	4	8	1
	강원	13	12	11	9	0
	충북	15	11	5	13	0
	충남	16	17	15	13	0
	전북	15	17	17	13	0
	전남	27	22	22	14	0
	경북	18	5	9	12	0
	경남	14	12	6	10	0
	제주	2	2	5	0	0
	합계	150	127	103	102	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2022~2026)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 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성격 및 국비분담률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가축방역 대응지원 (3940 -335)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직접사업 (100%)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실시 및 임관 여비 지급	61	45	61	32	53	52	53	52	53
가축방역 (6240 -301)	가축방역(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직접사업 (100%)	공중방역 수의사 초과 수당 등 지급	714	578	714	555	714	575	714	564	714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 사업 (7001 -100)	기타직보수(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직접사업 (100%)	공중방역 수의사 봉급 등 지급	13,754	12,304	13,840	12,052	14,196	11,549	12,722	11,053	12,4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